

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. 2. 25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5. 2. 15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2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 40회 사하구의회 (임시회)

제 1 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5. 2. 24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강명종)

가. 제안이유

○현행 민원창구에서 제 증명 발급시 제 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함으로써 시간 및 인력이 낭비되어 요금제기 복합인증기를 사용 제기 1회 작동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능률적인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며, 과학화된 행정장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및 수입금 관리공무원 지정
- 제기에 의하여 인정될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규정
- 제기 사용에 의한 수수료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서식 개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
본 개정조례는 「복합인증기」사용에 따른 계기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고 일일결산대장 서식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발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